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에서 장애인육상 발전을 위해 함께 업무를 담당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대한장애인육상연맹 회장

1. 채용개요

분야	채용형태	인원	업무내용
직원 (장애인체육)	계약직	1명	· 경리 업무 및 행정 보조 ·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출장 (국내 행사)업무 등

2. 지원 자격요건

응시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성별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운영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등
우대사항(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MS Office 등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한 자· 체육단체 등 유관기관 경력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회계업무 등)· 체육 분야 전공자 및 선수출신·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3. 채용조건

- (근무조건) 주 5일제 근무, 1일 8시간(월~금, 09:00~18:00) * 행사 등으로 출장 및 주말근무 가능.
- (근무장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소재)
- (급여조건) 내부규정에 한 함
- (기타 복리 후생) 4대 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지원, 중식제공
- (계약기간) 2023. 6. 중 ~ 2023. 12. 31. (약 7개월)

4. 전형 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제2차) 면접 및 구술 전형 * 면접 및 구술 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5.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서류접수	2023. 5. 12.(금) ~ 5. 21.(일)	18:00 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5. 22.(월)	합격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면접 및 구술	별도 개별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별도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	
채용 예정일	2023. 6. 중	

- * 일정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2차 면접을 실시 후 최종 채용)
- * 장애인육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면접 및 구술 진행.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포함)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 등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기타서류(각종 증빙서류 등) * 기타서류는 해당 할 경우 제출, 제출 시에만 인정됨.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3. 5. 12.(금) ~ 5. 21.(일)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마감일 기준 18:00까지)
- (접 수 처) E-mail : kafdkorea@hanmail.net (제목 : 직원채용 응시 김육상)
- (문의사항)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 ☎ 02-455-4081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서 제출 등 기타 임용이 부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
- 지원자 중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붙임문서에 의하지 않은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본 연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별도 통보 드립니다.

[별첨]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운영규정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채용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무면허운전·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4, 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